

법인카드집행지침

사단
법인

대한철인3총협회

목 적

협회 실정에 맞는 법인카드(사업비카드 및 자체카드) 및 업무 추진비예산(국고,기금,자체 등)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

I. 일반사항

- 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그 동안의 관행 등을 개선,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.

II. 집행지침

- 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사전 기본결재가 원칙
 - ▷ 목적(사업추진, 회의 등), 사유(구체적인 협의·회의 내용), 일시,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
 - ▷ 사용 예상금액, 참석인원, 1인당 지출액, 대상기관(개인), 주관자 및 참석자 등
- 공식회의, 업무협의, 간담회 등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경우(총회, 이사회, 회장단회의, 경기단체 및 시도체육회 관계자 간담회 등)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참석자 1인당 30,000원 이내에서 집행
- 법인카드 「클린카드제」 시행지침 준수
 - ▷ 관련문서 : 감사평가실 - 358호('05.11.10)
 - ▷ 제한업종 : 유흥주점 등 57개 업종(별첨 참조)

III. 세부지침

- 사전 기본결재 및 품의
 - ▷ 기본결재 전결금액
 - 위임전결내규에 따름

- ▷ 경비사용 후 집행품의
 - 기본결재 금액이 초과할 경우는 전결권 재결
 - 기본결재 금액 또는 이하 일 경우 각 실·팀장 전결
 - 업무추진내용 등 경과보고서 명시
- 법인카드 분할결재 금지
 - 사용 결재 시 동일거래 2~3건 등 금지
- 법인카드 사용시간 및 지역 제한
 -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은 제한하며, 당일 밤 11시 까지 사용.
 - 자택근처 사용은 제한.
 -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은 제한.
 - 특별한 경우란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용이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(출장, 사전 내부결재 등)이 가능한 경우.
-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
 - 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법인카드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구입 시 구체적인 구입내역(일시, 수량, 구입처 등) 및 배부내역(배부수량, 수령인명)을 첨부한다.
- 카드전표에 반드시 사용자의 실명으로 서명
 - 특히,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도 회계처리를 위한 카드전표에는 반드시 실명을 기재한다.
-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 금지
 - (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,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)
- 실·팀별 법인카드는 각 실·팀장 책임 하에 사용·관리
- 행정사항
 -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실시(회계부서)

【별첨】

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선정

구 분	사용 제한 업종 (안)	비고
공통적용 업종 (20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룸싸롱, 스텐드빠, 나이트클럽, 카바레, 단란주점, 맥주홀, 유흥주점 - 성인용품 판매점, 안마시술소, 이용·미용실 - 당구장, 비디오방, 전화방, 카지노, 전자오락실, 게임방, 복권방, <u>실·내외 골프장(스크린골프장포함)</u>, 노래방, 헬스사우나 	- 문화부에서 유관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도출
자율지정 제한업종 (37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류판매(유통), 극장식당, 남·여기성복, 양품점, 골동품·예술품, 학습지, 회원제, 방문판매, 다단계 판매 - 예식장, 결혼(가례)서비스, 혼수전문점, 장의사, 이벤트, 상담실(결혼 등), 장례식장, 묘지(남골공원 등), 온천장 - 유선 TV, 피부미용실, 스포츠 마사지, 체형관리 - 학교등록금, 유치원, 종교단체, 무속·철학관, 메리야스, 아동복, 자석요, 악세사리, 화방, 악기, 종교상품권, 피아노대리점, 인형 및 완구 아동용 자전거, 총포류판매, 산후조리원 	- 본 협회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업종 주로 선정